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 선고 2021가단521803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조홍래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1. 2.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9,570,862원과 그중 19,397,795원에 대하여는 2021. 4. 27.부터, 20,110,958원에 대하여는 2021. 7. 26.부터 각 2021. 9. 2.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1.항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0. 11. 5. 체결된 소유권이전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파주시 2020. 11. 5. 접수 C로 마친 소유권변경등록의 말소등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0. 11. 27. 체결된 소유권이전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파주시 2020. 11. 27. 접수 D로 마친 소유권변경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조규설

별지